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재나121(본소), 2020재나138(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김명진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1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516705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15184(본소), 2018나 7145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2,750,000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95,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인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167054호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C, D을 상대로는 피고가 C, D에게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바, 위 제1심 법원은 2018.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C, D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8나15184(본소), 2018나71450(반소)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바,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7. 5. 피고 및 C, D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C, D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53489(본소), 2019다253496(반소) 사건으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으나, 위 상고심 법원이 2019. 10. 31. 피고 및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E의 허위 증언을 증거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은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각 대여금채권의 존부와 변제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문현정, 판사 강지현

1)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인 C, D 사이에 이루어진 각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외에도 C, D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각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만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C, D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재심사건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